

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5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8월 17일

발 의 자 : 김영한, 김창원, 송재형,
최영수, 김정태, 김제리,
김구현, 전철수, 김희걸,
김기대, 문형주, 박진형,
조상호 의원(13명)

1. 제안이유

○ 도시농업의 정의에 곤충사육(양봉 포함)을 추가하고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는 등 최근 개정된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농업위원회의 소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효율적인 도시농업 지원을 위하여 일부 규정을 개정함.

2. 주요골자

- 도시농업, 도시농업관리사 등 개정된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규정을 정비함(안 제2조)
- 도시농업위원회의 전문적·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(안 제6조의2)
-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고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3조의2)
- 청문절차에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(안 제16조)
-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사회적 약자 및 어르신·어린이를 위한 반려식물 보급 등에 관한 사업, 농부의 시장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함(안 제2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 제1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

1. 도시농업이란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,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 - 가.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
 - 나.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
 - 다.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(양봉을 포함한다)하는 행위
7. “도시농업관리사”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, 교육,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위원회의 설치·기능 등)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농업위원회

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.

1. 제4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2.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,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
3.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제2항 중 “부위원장 1명은” 을 “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” 로 하고 제6조제3항제1호의 “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” 를 “서울특별시 의회에서” 로 하며 제6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소위원회의 설치·운영) ① 위원회는 전문적·효율적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③ 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,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의 할 수 있다.

④ 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도시농업의 날) ① 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.

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6조(청문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, 이때의 절차는 「행정절차법」을 따른다.

1.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
2.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
3. 법 제11조의3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

제20조제1항제7호 중 “인접”을 “인근”으로 하고 제20조제1항제8호를 제10호로 하며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사회적 약자 및 어르신·어린이를 위한 반려식물 보급 등에 관한 사업
9. 농부의 시장에 관한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도시농업"이란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,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, 여가, 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도시농업"이란 「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,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</p> <p>가.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</p> <p>나.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</p> <p>다. 「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(양봉을 포함한다)하는 행위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"도시농업관리사"란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, 교육,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</p>
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)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도시농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제4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p> <p>2.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,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</p> <p>3.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</p> <p>4.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	<p>제5조(위원회의 설치·기능 등)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.</p> <p>1. 제4조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p> <p>2. 도시농업의 관련 연구, 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</p> <p>3.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중장기 비전설정 및 실천계획에 관한 사항</p> <p>4.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
<p>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	<p>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

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과 위촉직 위원중에 선출된 1명으로 하고, <u>부위원장 1명은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</u> 추천한 시의원 2.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.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<p>④ ~ ⑤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진흥본부장과 위촉직 위원중에 선출된 1명으로 하고, <u>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</u> 호선한다.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서울특별시의회에서</u> 추천한 시의원 2.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.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<p>④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시장은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6조의2(소위원회 설치·운영)</u> ① 위원회는 전문적·효율적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<u>소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</u></p> <p>③ <u>소위원회는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,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심의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 <u>소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안건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u></p>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13조의2(도시농업의 날)</u> ① <u>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한다.</u></p> <p>② <u>시장은 도시농업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제16조(청문)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, 이때의 절차는 「행정절차법」을 따른다.</u></p>	<p><u>제16조(청문)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하며, 이때의 절차는 「행정절차법」을 따른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<u>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지정 취소</u> 2. <u>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</u> 3. <u>법 제11조의3에 따른 도시농업관리사의</u>

	자격 취소 또는 정지
<p>제20조(도시농업의 육성 지원)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,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7. 서울시 <u>인접</u> 시·군에 서울시민을 위한 주말농장(텃밭)조성 사업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설></p> <p>8.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0조(도시농업의 육성 지원)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추진하는 개인, 단체 및 자치구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서울시 <u>인근</u> 시·군에 서울시민을 위한 주말농장(텃밭)조성 사업</p> <p>8. <u>사회적 약자 및 어르신·어린이를 위한 반려식물 보급 등에 관한 사업</u></p> <p>9. <u>농부의 시장에 관한 사업</u></p> <p>10.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